

●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

행정자치부예규 제200호(2005. 12. 30)

I. 개 요

1. 목 적

-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기준 및 지방채발행의 기준 마련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채무관리 기준 등 규정

2. 근 거

- 지방재정법 제11조, 제12조, 제44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

3. 용어의 정의

- 가. 지방채무(법 제2조제5호)
 -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함
- 나. 지방채(법 제11조, 시행령 제7조)
 -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, 그 채무의 이행이 1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, 지방채증권,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
 - 지방채증권 :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

지방채를 말하며,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포함

- 차입금 :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, 외국정부·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포함
- 다. 지방채발행 한도액(법 제11조, 시행령 제10조)
 -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함
 - 지방채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채발행액(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금액 제외), 채무부담행위액,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
- 라. 지방채인수(시행령 제12조)
 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, 청사정비기금,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
- 마. 채무상환비비율
 - 당해연도 지방비로 상환한(할) 채무원리금에 대한 일반재원 수입액의 비율로서,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충당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함

$$\text{채무상환비비율} = \frac{\text{최근 4년간 (평균)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}}{\text{최근 4년간 (평균)일반재원수입액}} \times 100$$

- 채무액 = 지방채상환원리금 + 채무부담상환액 + 보증채무이행책임액
- 일반재원 = 지방세 + 보통교부세 + 경상적세의수입 + 조정교부금 + 재정보전금
- ※ 주의 : 채무상환비율 산정시는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원리금을 지원 또는 전액 상환(전출금 포함)하는 특별회계도 포함하여 통합재정수지로 계산
 -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포함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채무상환 전출금을 포함
 - 채무상환액중 조기상환액 및 차환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함
- ※ 향후 채무상환부담을 고려, 『미래기준』 채무상환비율은 초과승인시 반영

바. 예산대비채무비율

- 전전연도 예산총규모대비 채무총규모의 비율을 말하며 채무총규모에는 지방채잔액, 채무부담행위 잔액, 보증채무 이행책임잔액이 포함됨

$$\text{예산대비 채무비율} = \frac{\text{채무총규모}}{\text{예산총규모}} \times 100$$

- 채무총규모 = 지방채잔액 + 채무부담행위 잔액 + 보증채무 이행책임잔액
- 예산총규모 = 일반회계 + 기타특별회계 + 공기업특별회계
- ※ 채무 및 예산규모는 결산자료로 산정

사. 실질수지비율

- 일반재원에 대한 전전연도 결산상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차액의 비율로서,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임

$$\text{실질수지비율} = \frac{\text{실질수지(형식수지 - 익년도 이월금 - 지방채발행액)}}{\text{일반재원}} \times 100$$

- 형식수지 = 세입결산액 - 세출결산액
- 익년도이월금 = 계속비이월금 + 명시·사고이월비 + 보조금집행잔액
- 일반재원 = 지방세 + 보통교부세 + 경상적세의수입 + 조정교부금 + 재정보전금

아. 감채기금

-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액 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한 기금을 말함

II. 지방채발행한도액 산정기준

1. 개 요

-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(시행령 제10조)
-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자치단체를 재정상황, 채무규모, 채무상환일정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, 유형별로 한도액을 설정함

2. 산정기준

-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자치단체별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

구 분	1유형	2유형	3유형	4유형
채무상환비율	10% 이하	10%이하	10초과 ~ 20%이하	20% 초과
예산대비채무비율	30% 이하	30%초과 ~ 40%이하	40%초과 ~ 80%이하	80% 초과

-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결산의 일반재원기준으로 설정함

구 분	1유형	2유형	3유형	4유형
일반재원대비	10%이하	5%이하	3%이하	0

※ 일반재원 = 지방세 + 보통교부세 + 경상적세외수입 + 조정교부금 + 재정보전금

3. 지방채발행 한도액 감액

-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회계년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음
 -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과도하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은 경우
 - 초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

III. 지방채 발행기준

1. 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

-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다음과 같은

지방재정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

-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·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반영
-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·융자심사의 반영

2.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의 경우

가.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(시행령 제9조)

- 공용·공공용시설의 설치
-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
-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
-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-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
-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※ 지방채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불가

- 투·융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(서울 30억 미만, 광역시·도 20억 미만, 시군구 10억 미만)
- 청사정비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소규모 지방청사 관련 사업은 가능

※ 사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이행여부,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·적정성, 기체계획의 적정성, 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

나.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총당순서

-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채무부담행위액, 보증채무부담행위액중 채무이행책임금액, 지방채발행순으로 총당하여야 함

다. 외채발행

- 한도액의 범위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(법 제11조)
-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(시행령 제8조)

3.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

가.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(시행령 제9조)

-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
-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-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※ 지방채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불가

- 투·융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(서울 30억 미만, 광역시·도 20억 미만, 시군구 10억 미만)
- 청사정비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소규모 지방청사 관련 사업은 가능

나. 승인 기준(수시심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)

- 단체유형별 승인기준

< 1유형 자치단체 >

- 재정투융자승인 받은 사업, 관계 중앙부처의 적정의견인 사업에 대하여 승인원칙

< 2,3유형 자치단체 >

- 채무규모가 증가되지 않도록 '발행년도 지방채상환금액내에서 승인원칙
-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순세계 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 상황에 활용하여야 함
- 재정지표 등에 의한 승인기준
 - 지방채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
 - 실질수지비율이 -10%이상인 경우
 - 최근 5년간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,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

< 예 외 >

- "지방채발행 한도액 초과승인기준"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채발행 초과승인을 할 수 있음
 - 단기·고금리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부담이 없는 차환채의 발행
 - 재해 등으로 사업시행이 긴급한 사업
 - 상환재원의 대부분이 국비(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) 또는 특정채원으로 충당되는 사업
 -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

다. 지방공기업 사업

-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방채발행 승인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

라. 외채발행

-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(시행령 제8조)

마.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

- 지방채발행 초과승인을 받은후 발행계획을 변경할 때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 보고로서 같음
 -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이율을 낮추는 경우
 - 이율을 높이거나, 상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채권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 - 지방채 상환년한을 단축하거나 또는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 및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
 - 지방채의 상환년한을 연장하지 않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 - 도시철도공채발행 승인액의 10%이내에서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

4. 자치단체 조합의 지방채 발행(시행령 제11조)

- 가.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(시행령 제9조)

- 공용·공공용시설의 설치
-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
-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
-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-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
-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- ※ 지방채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불가
 - 투·융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(서울 30억 미만, 광역시·도 20억 미만, 시군구 10억 미만)
 - 청사정비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소규모 지방청사 관련 사업은 가능

나. 지방의회의결 등(법 제11조)

-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
-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짐

5. 부적절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조치(시행령 제10조)

-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회계년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감액하고 초과발행승인을 제한할 수 있음
 -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과도하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은 경우

- 초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

IV. 중앙정부자금 배정기준

1. 공공자금관리기금

- 한도액 범위 내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 배정
- 초과승인분에 대하여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
 - 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 - ② 국가의 주요시책사업
 - ③ 지역 SOC사업
 - ④ 차환채
 - ⑤ 기타 주민복지증진 사업
- 전체사업규모가 20억원미만인 소규모 사업 배제
- 전국적인 형평성 고려 배정

2. 청사정비기금

- 청사정비기금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청사표준면적을 준수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정원칙

3. 기타 정부특별회계 및 기금

-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된 융자지원사업 배정

V. 지방채 발행의 절차

1.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통보(시행령 제11조)

-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연도 지방자

치단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7월 15일까지 통보

2. 지방채발행 승인(시행령 제11조)

- 매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“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”에 따라 발행예정 전년도에 “지방채발행종합계획(정기분)”을 수립하고 지방채발행계획(정기분)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
 - 다만, 시·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야 함
-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(정기분)중 법 제11조제2항단서·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사업과 지방채인수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및 결과 통보

3. 정부자금 인수사업 확정(시행령 제11조, 제12조)

-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(정기분)중 정부자금 인수사업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및 결과 통보

4. 지역개발기금 등의 인수신청(시행령 제12조)

- 시·군·구에서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

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(정기분)을 7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

VI. 지방채무관리 및 운용

1.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및 관리원칙

-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채무는 다음과 같음(시행령 제108조)
 - 지방채증권, 차입금, 채무부담행위, 보증채무부담행위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(법 제87조)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·채무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(법 제 87조)

2. 지방채무운용 기준

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하여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- 지방채사업은 그 발행 및 차입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, 자금수요 등을 판단하여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써, 차입후 자금의 장기보관 등으로 이자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
- 지방공기업사업에 대하여는 인건비

절감, 합리적인 요금관리, 계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과다한 채무로 공기업운영에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

3. 감채기금의 적립단체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비율 기준

-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명을 도모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함
- 전항에 의해 매년 발생하는 당해예산의 순세계잉여금중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할 비율은 다음과 같음
 - 1 유형중 다음 자치단체 :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
 - 향후 채무상환원리금이 일정년도(3-5년)에 집중되어 당해연도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
 -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수개년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원확보에 부담이 되는 단체
 - 차입자금이 단기·고금리에 치중되어 원리금상환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
 - 2 유형 :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
 - 3 유형 : 순세계잉여금의 30%이상
 - 4 유형 : 순세계잉여금의 50%이상

VIII. 기 타

4. 채무관리계획 수립단계기준

- 채무관리계획 수립단계기준
 - 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이 10%초과인 단체이거나
 - 예산대비채무비율이 30%초과인 단체
- 채무관리계획 내용
 - 5개년간의 채무감축목표를 자체 설정
 - 감채기금의 적립 및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 활용
 - 매년도 지방채발행계획제출시 향후 5개년간의 채무운용보고서를 제출

VII.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

1. 구 성

-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업무관련 팀장 등으로 10명 내외로 구성
- 심사위원장은 외부민간위원중에서 호선

2. 심사대상 및 방법

-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발행사업, 자금인수신청 사업에 대하여 심사
- 심사는 심사조서 및 실무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사하되, 필요시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관계관 참석
-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

1.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지방의회 의결

-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같음할 수 있음
 - ※ (내부무 재경 13320-879/ '98. 12. 10)

2.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음
-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
 - ※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령이 확정·공포되는 경우 확정된 것으로 봄

3. 지방채무관련 통계 및 보고

- 지방채 신청, 승인, 발행, 상환 등을 한 경우
 - 해당사업 내역, 발행일시, 차입형태, 회계구분, 자금구분, 차입선, 금리, 상환조건, 상환재원, 당해연도 총 발행누계 등을 포함한 내용을 지방채전산화프로그램에 즉시 입력
- 기타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등 필요한 자료보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제출

4. 세부기준

-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채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“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” 등으로 따로 정함

5.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

-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
- 이 규정 시행전의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사항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봄
- 행정자치부예규 제92호 『지방채무 관리 및 지방채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은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함